

# 확장하는 가족\*

- 은유로서 가족적인 것의 가능성 -

류도향\*\*

## 목 차

1. 들어가며
2. 서구 근대의 시민가족 서사
3. 한국 근대의 혈연가족 서사
4. 은유로서 가족적인 것의 확장
5. 나가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혈연/비혈연 이분법에 근거한 한국의 근대 가족담론을 역사적으로 사유하면서 가족패러다임의 확장 가능성을 성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서구 근대가족과 비교 속에서 한국의 혈연가족이 갖는 독특한 의미론적 위상을 살펴볼 것이다. 서구의 시민가족 서사에서 혈연관계는 전통을 부정하고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하기 위해 지양되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된 반면, 한국의 근대가족 서사에서 혈연관계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전통)와 '미래'(근대)를, 공간적으로는 '집'(사적 영역)과 '나라'(공적 영역)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은유적 매체로 자리매김된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의 "가족=혈연가족" 이데올로기를 규정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정치적 삶의 지평에서 가족 서사가 발휘하는 규범적·억압적 효과를 폭로하고, 동시에 혈연가족 서사에 내재된 '가족적인 것'(the familial)을 전통가족과 신가족을 매개하는 은유적 매체로 재맥락하고 재해석하는 담론이 요구된다.

주제어: 혈연가족, 개인, 가족, 국가, 가족 서사, 확장하는 가족, 가족적인 것, 가족 은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교수

## 1. 들어가며

최근 이혼과 비혼이 급증하고 2015년 이래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매김되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요구되고 있다.<sup>1)</sup> 혈연가족을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최후의 보루로 여겨온 지배적인 가족인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아니라, 탈전통화, 초개인화, 성평등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4차 산업화 등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탱해온 물질적 토대를 붕괴시키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 타인과의 전인격적 결합과 친밀한 공동체에 대한 동경은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출현시키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밥상 공동체, 주거 공동체, 나아가 졸혼 가족, 동거 가족, 분자가족, 팻팸 등 복수의 가족‘들’의 출현은 그런 동경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복잡한 가족현실의 지형을 고려할 때 ‘가족=혈연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표준대국어사전)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가족의 정의는 서로 대등한 인격체로서 부부와 혈연관계가 중심이 되는 근대적 핵가족을 지시하고 있다. 이런 근대적 의미의 가족은 서구의 경우 17, 18세기에 제도화되었고, 한국에서는 20세기 초 1920~30년대 일제 식민지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호주제가 도입되고, 부부 중심의 소가족론, 가정개량론 등 신문명 담론이 보급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저 근대가족의 정의는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근대 가족담론에서 혈연관계가 갖는 독특한 의미

1) 2019년 5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66.3%가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반드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48.5%가 동의했다.

론적 위상을 역사적으로 사유하면서 가족패러다임의 확장 가능성을 성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근대가족 담론이 형성된 과정을 비교해볼 것이다. 서구의 시민가족 서사에서 혈연관계는 전통을 부정하고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하기 위해 지양되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된 반면, (2절. 서구 근대의 시민가족) 한국의 근대가족 서사에서 혈연관계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전통)와 ‘미래’(근대)를, 공간적으로는 ‘집’(사적 영역)과 ‘나라’(공적 영역)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은유적 매체로 자리매김된다. (3절. 한국 근대의 혈연가족) 이처럼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의 “가족=혈연가족” 이데올로기를 규정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정치적 삶의 지평에서 가족 서사가 발휘하는 규범적·억압적 효과를 폭로하고, 동시에 혈연가족 서사에 내재된 ‘가족적인 것’(the familial)을 전통가족과 신가족을 매개하는 은유적 매체로 재맥락하고 재해석하는 담론이 요구된다. (4절. 가족적인 것이라는 은유의 확장)

## 2. 서구 근대의 시민가족 서사

서양에서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근대적 형태의 가족(Family)은 개인의 선택과 선호에 근거한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뜻한다. 서로 대등한 인격체로서 부부가 중심이 되는 소가족의 형태가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표준적 모델로 승인되고 제도화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가족이 오늘날과 같이 성과 사랑이 중심이 되는 친밀한 사적 영역으로 개념화된 것은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다. 즉 경제, 규범, 교육 등의 기능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 차원(자본주의, 법, 학교 등)으로 분화된 근대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애정이나 공감과 같은 정서적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갖게 된 것이다.

이때 근대가족은 가족구성원들 간 친밀성(Intimacy)을 자신의 원리로 삼는

다.<sup>2)</sup> 친밀성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형성된 부르주아적 핵가족의 사생활 또는 부르주아적 사고 집단(société)에서 등장한 인간관계의 특정한 형식을 가리키며<sup>3)</sup>, ‘공적 영역(public area)’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private area)’의 자율적 원리를 대변한다.<sup>4)</sup> 친밀하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공개되지

2) 루만(Niklas Luhmann, 1927~1998)은 친밀성을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자기정체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특징짓고, 기든스(Anthony Giddens, 1938~ )는 가장 내밀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섹슈얼리티(Sexuality)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또한 준이치(齋藤 純一, 1958~ )는 친밀성을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 관심에 의해 형성,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학자들은 개념 규정상 차이를 보이지만, 18세기의 친밀영역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만남, 다시 말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차이 또는 국가의 간섭이나 경제적 압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모델이 새롭게 출현했다는 데 동의한다.

3) ‘친밀성’은 ‘가장 내적인(inmost)’, ‘가장 내밀한(innermost)’, ‘가장 깊은(deepest)’을 뜻하는 라틴어 최상급 ‘인티무스(intimus)’에서 온 말이다. 단어로써 친밀성은 16세기경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의 사전상 의미는 첫째, 친하게 지내다, 둘째, 한 사람의 내밀한 사유, 감정, 신념, 감정이었다. 16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사전은 친밀성을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독일에서는 18세기 초, 중반경에서야 친밀성에 대한 문헌 기록들이 나타나며, 주로 첫 번째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친밀성이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적 개인이 탄생한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부터다. Marianne Streisand, “Intimität”, *Ästhetische Grundbegriffe* 3, Karlheinz Bark. usw.(hrsg.), J.B.Metzler, 2010, 181~183면 참조.

4) 이런 사적 영역의 확립은 근대적 사생활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19세기 초에 이르러면 “사생활의 벽”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다. “사생활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개인의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알려질 수도 없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피신의 장소로서 고독과 비밀,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졌다. 원래 상류층은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를 제외하면 홀로 지내기를 꺼려했다. 고독은 최악의 궁핍으로 여겨졌고, 권태에 빠진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회피되었다. 하지만 17세기 말경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강렬히 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또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릴 때 공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평상시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와 더불어 주거공간도 점차 변화를 겪었다. 공동주거 장소였던 거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개별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들이 늘어났다.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방들이 공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내밀성과 안락함의 특성을 지닌 실내 거처 또한 생겨났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신체에 민감해졌고,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거처의 최우선적인 공간이자 내밀한 휴식처는 개인 침실이었다. 열쇠 잠그기 혹은 빗장 지르기 등을 통해 가족의 내밀한 생활은 침실과 그 곁방들로

않고 감추어져야 할 ‘사적인 것(private)’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남에게 보이지 않는 내밀한 핵가족의 사적 영역은 이차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친밀한 사적 영역으로서 핵가족은 ① 국가와 시장 논리에 맞서, ② 인간과 인간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나고, ③ 서로를 전인격체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④ 서로의 도와와 자기실현을 이끌어내는 ‘인본성’의 이념을 보존하고 구현하는 장소인 것이다.<sup>5)</sup>

이처럼 서구에서 가족의 중심 의미가 혈연관계보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의 장소로 개념화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15세기부터 시작되어 16~17세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종교 개혁은 “인격의 존엄성 관념, 즉 인간은 누구나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존엄한 인격체라는 관념”을 정착시킨다.<sup>6)</sup> 또한 구텐베르크(Johannes Gensfleisch Gutenberg, 1398~1468)의 인쇄 혁명은 읽고 쓰는 능력을 전파함으로써, 말과 행위의 문화로 유지되던 공동체의 낡은 유대 관계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내면세계를 발견하고, 내밀한 욕구와 감정을 풍요롭게 가꾸려는 개인의 욕구가 독서, 일기 쓰기, 서신교환뿐만 아니라, 고백록, 1인칭 소설 등 자전적 문학으로 가시화된 것이다.<sup>7)</sup>

---

이루어진 요새 속에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게 변화해갔다. 조르주 뒤비, 『사생활의 역사』 2권, 성백용 외, 새물결, 2006, 50~51면 참조; 미셸 페로, 『방의 역사』, 이영림·이은주 옮김, 글항아리, 2013, 105면.

5)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 )는 친밀성을 “자유(자발성), 사랑, 교양(도야)”이라는 세 가지 계기가 수렴되는 “인간성” 또는 “인본성”의 원리로 파악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부르주아 핵가족의 친밀성은 현존하는 사회적 지배질서 안에서 그것의 강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했다. 즉 핵가족의 사랑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인본성의 원리가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법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법칙도 정지”시키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것의 대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소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107면, 122~123면.

6) 래리 시덴틀, 『개인의 탄생』, 정명진 옮김, 부글, 2016, 478면 이하 참조.

이처럼 종교개혁과 인쇄혁명에 기반해서 꾸준히 개인의 이념을 형성해온 서구사회에서 혈연관계는 전통사회를 부정하기 위해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되었다. 우리는 그 흐름의 단면을 근대 사회계약론의 시초가 된 홉스(Thomas Hobbes, 1588년~1679)의 『리바이어던』(1651년 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생에 의한 지배권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갖는 것으로 부권적(paternal)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그 자식의 아버지라는 이유에서, 즉 출생 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동의에서 생긴다.<sup>7)</sup>

위 인용문에서 홉스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가 자식의 출생과 함께 곧바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동의”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혈연관계는 개인의 탄생 이전에 선행하는 자연발생적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을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연관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서구의 근대가족이 대등한 인격체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성과 사랑에 기초한 서구 근대가족 담론이 형성되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18세기 말에 등장한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서사였다. 문학의 한 장르인 로맨스(romance)와 같은 어원을 갖는 ‘낭만적’ 사랑은 나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알아보는 단 한 명의 파트너와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단 하나의 이야기다.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단순히 허구적인 이야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전통의 권위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삶을 구성해나가는 모델로 자리매김되었다.<sup>8)</sup> 보다 자세히 말해서 신분, 지위, 재산에 상관없이 순수한 연애 감정에서 출발해 자발적으로 결

7)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124~125면 참조.

8)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진석용 옮김, 나남출판, 2008, 266면.

9)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106면.

혼 서약을 맺고 평생을 함께 하는 낭만적 사랑의 기획은 주체가 자신의 미래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이념이 현실화된 18세기에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시민가족의 서사로 확장된다. 헤겔(G. W. F. Hegel, 1770~1831)은 시민가족의 서사를 인륜성(가족, 시민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 그는 가족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세분화해 해석하면서, 낭만적 사랑의 한계를 지적한다. 남편과 아내는 성관계와 감정이 혼재된 자연적인 합일 상태에 있어서 서로를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인륜성의 즉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sup>10)</sup> 그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낳아 자유로운 존재로 양육하면서 보다 인륜적인 사랑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돕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인륜성의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한다. 그가 보기에 참으로 인륜적인 가족은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들은 서로에게 욕정을 품지도 않고 비대칭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대등한 인격적 주체로서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헤겔은 가족이 자연발생적인 혈연관계를 '지양'할수록 인륜적으로 완성되고, 가족의 인륜적 완성은 역설적이게도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형제, 자매가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혈연관계로서 원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가족 안에서 습득한 사랑, 양보, 상호성, 이타주의와 같은 인륜성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형성하고, 시민사회는 다시 국가라는 최고의 인륜성으로 '지양'된다.

실제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서구 핵가족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인본성의 원리가 시민사회와 국가

10) G. W. F. 헤겔, 『정신현상학』, 임석진 옮김, 한길사, 2006, 33면 참조

11) G. W. F. 헤겔, 『법철학』, 임석진 옮김, 지식산업사, 1990, 277~285면 참조

의 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부르주아 핵가족 안에서 연습된 주체성은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법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법칙도 정지”된 채 “단순히 인간적인 것의 대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문예적 공론장으로 구체화되었다.<sup>12)</sup> 예술작품의 의미를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문예적 공론장에서 행해진 주체성의 실험과 도전은, 교회와 국가의 공권력에 의문을 품고 비당파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행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적 공론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나아가 정치적 공론장을 통해 형성된 여론은 국가의 통치를 견제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법으로 제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공성의 토대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서구 근대가족에서 혈연관계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우위를 두는 가족서사는 개인-가족-시민사회-국가의 상호 긴장관계 속에서 근대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치적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 3. 한국 근대의 혈연가족 서사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7세기 이래 200여 년에 걸쳐 형성된 서구 근대 가족 담론에서 혈연관계는 전통을 부정하고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하기 위해 지양되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되었다. 이와 비교해서 볼 때 한국의 근대 가족에서 혈연관계는 개인적, 정치적 삶의 지평에서 독특한 의미론적 위상을 갖는다.<sup>13)</sup>

우리는 보통 한국인이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유교전통에서 비롯

12)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107면.

13) 사실상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와 문화 담론, 문학과 예술 분야의 담론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범위에서는 제도사적 관점에서 분석만을 다룬다.



된 산물로 여긴다. 하지만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혈연가족의 의미는 식민지 시기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고화된 근대적 혈연가족 서사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족서사는 전통과 근대, 서구적 근대성과 식민적 근대성이 교차하는 복잡한 역사적 지형을 배경으로 한다.

근대 이전의 가(家)는 부부 중심의 혈연가족이 아니라, 집안, 가문(家門), 문중(門中)과 같은 대가족적 혈연공동체를 지시하는 개념이었으며, 17세기 중기에 확립된 전통가족은 횡으로는 나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4대조에, 종으로는 8촌에 이르는 방대한 친족집단을 의미했다. 이처럼 직계가족보다 넓은 범위의 혈연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은 부부의 애정이나 가족구성원간의 단란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 혈통을 잇고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함께 지내는 것이었다.

이런 전통적인 혈연공동체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근대적 가족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 더 정확히 말해서 일제 식민지 시기를 기점으로 한다. 일본은 국권침탈 이후 1912년에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제정하면서 조선에 근대적 가족제도인 호주제를 도입했다. 호주제는 각 집의 가장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일본이 1800년대 후반부터 산업사회로 진입할 때 일본식으로 받아들인 핵가족 모델이다.

일본은 호주제를 통해 결혼, 출생, 사망, 분가 시에 가족의 모든 변동사항을 국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전통가족을 근대적으로 재편해갔다. 특히 1939년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3차 개정에 따른 창씨개명은 집안과 가문으로부터 독립된 핵가족을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14)</sup> 조선총독부는 부계혈통에 따른 전통적인 성(姓)을 버리고, 각 가정마다 별도로 일본식

14) 원래 조선에서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같은 혈통일 경우 김씨와 이씨 등과 같은 성(姓)을 사용했다. 여성이 시집을 오더라도 시집은 시택의 성을 따르지 않았고, 장가오는 사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조선의 한 가정에는 여러 성을 갖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데 각 호마다 같은 성씨를 사용하는 것은 혈통을 부정하는 것이고 조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였다. 양현아, 『한국가족법 읽기』, 창비, 2011, 146~159면 참조.

씨(氏)를 정하도록 강제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의 연대를 느슨하게 만들었다.<sup>15)</sup> 일본이 창씨개명을 강요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징세, 징병, 치안 등의 통치 행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일본이 서양의 근대국가 nation을 번역한 개념인 “국가”는 <나라 國國>과 <집 家>가 결합한 말이다. <나라 國國>만으로도 이미 국가라는 뜻이 성립하는데, 여기에 굳이 왜 <집 家>를 함께 쓴 데서 일본의 근대국가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sup>16)</sup>

일본은 국민, 영토, 주권,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서구의 근대국가를 ‘나라’와 ‘가족’이 하나로 결합된 일종의 유기체적 모델로 이해한 것이다. 일본의 국가는 가장인 호주에게 큰 권한을 주고, 국가가 가족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창출했다. 한마디로 국가가 종가(宗家)이고 그 아래 신민(臣民)인 가장이 이끄는 각 호가 분가와 같은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대가족의 연대와 민족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은 조선을 내지에 복속시켜 근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는 데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일본은 호주제 도입을 통해 한국의 가족제도를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부계혈통주의와 조상숭배를 중시하는 조선의 관습을 부정하지 않고 통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sup>17)</sup> 이 과정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가부장권으로

15) 창씨개명에 반대해서 자결한 전남 곡성의 류건영(柳健永)은 조선 총독에게 보낸 소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슬프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죽지 못하고 30년간 치욕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혈족의 성마저 빼앗으려 한다… 금수의 도를 500년 문화 민족에게 강요한다. 나 건영은 짐승이 되어 사느니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택한다.”(이누노코(犬の子)와 향산 광광(이광수)… 창씨개명의 두 얼굴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2019년 3월 30일 경향신문 기사 발췌) 나라를 빼앗긴 30년의 치욕보다 류건영을 더 괴롭힌 것은 혈족의 성을 빼앗기는 것이었는데, 이는 짐승이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인에게 전통적인 혈통 계승을 통해 갖는 소속감과 정체성은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6) 김성배,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 개화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집, 2012;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학회 자료집』, 2001 참조.

서 ‘호적상의 가와 혈족집단을 대표하는 ‘조선의 전통가족’이 착종된 제3의 가족이 탄생된다.<sup>18)</sup> 이는 한편으로 국가의 조직을 위해 일정하게 평준화된 경제단위로서 소가족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존립 토대가 조상의 혈통에 있는 신분적 성격을 갖는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지만, 일본 조선 민사령을 대체할 새로운 민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8년에서야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되었는데, 새로 제정된 민법 제799조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sup>19)</sup>

위 가족의 범위에서 호주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대한 민국 민법이 일본의 호주제에 기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보통의 근대국가에서 나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한 1인 1적 제도를 채택한 반면,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호적제도를 사용하는 국가였다. 일본은 1947년 가족법 개혁을 하면서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 호주제를 폐지했지만, 한국에서는 호주

17)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무능력하거나 현재 호주에게 불손할 경우 호주계승을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폐제제도’처럼 적장자의 호주승계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의 경우 관습상 장남에게 문제가 있을 시에도 가문의 계통을 잇는 적장자의 지위를 폐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가족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 호주에게 가족 부양의 의무를 강력하게 부가하고, 각 호마다 가계를 계승할 적장자의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양현아, 『한국가족법 읽기』, 창비, 2011, 167면 참조

18) 양현아, 『한국가족법 읽기』, 창비, 2011, 172면 참조.

19) <http://www.law.go.kr> 민법 제779조 연혁 참조.

제가 계속 유지된 것이다.

호적에 올라가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제도 하에 혈연가족은 한 사람이 자신의 생존과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속해야 할 울타리가 되었다. 이것은 혈연관계를 국가의 유기체적 구성단위로 설정한 일본의 통치 방식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강고하게 자리매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제는 가부장주의, 남아선호사상, 성차별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5년까지 지속되었다.

호주제가 폐지될 때 가족의 범위를 정의한 민법 제779조도 함께 삭제될 계획이었지만, ‘가족 규정의 삭제가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경되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sup>20)</sup>

변경된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호주라는 말은 빠졌지만, 여전히 혈연관계가 가족의 중심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부계혈통주의와 가부장적 원리가 가족의 중심 원리가 됨을 알 수 있다.

외국법에서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가족의 범위를 명시하는 경우는 없다.<sup>21)</sup>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을 규정하는 곳은 없고 사회법전 제7조 급부수급권자 규정에서

20) <http://www.law.go.kr> 민법 제779조 연혁 참조.

21) 이은정, 『가족의 범위』, 『가족법연구』, Vol 20, No. 1, 2006 참조.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용어로 필요공동체(Bedarfsgemeinschaft) 사용하고 있다.<sup>22)</sup> 우리의 경우 혈연 중심의 가족을 표준화된 모델로서 법제화하고 있는 것은 가족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을 통한 통치를 수행하면서 혈연가족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였다. 이는 1960~80년대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국가는 60년대에는 3자녀를, 70년대에는 2자녀를, 80년대는 1자녀가 있는 가족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상적 가족 모델로 정형화하고, 출산율, 혼인율, 경제활동인구 구성, 부양인구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가족은 학교, 군대, 회사, 기업 등의 규율 체계에 개인을 고정시키는 연결점(interlocking point)이자, 각각의 규율 체계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개인을 여러 규율체계들로 순환시키는 전환점(switch point)이 되었다.<sup>23)</sup>

새마을 운동, 금모으기 운동 등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의 국난 극복기는, 가족과 국가를 혈연 관계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며 회사와 마을, 국가를 마치 내 가족처럼 여기는 집단적 심성구조에 기초한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족은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sup>24)</sup>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을 통해 결합하여 아이를 낳은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전제하고 출산이나 양육에 관련한 제도를 지원하지만, 이 또한 국가가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만들고자 하는 허구의 가족일 수 있다.<sup>25)</sup>

22) 이때 필요공동체란 서로 책임지고 지지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https://www.sozialgesetzbuch-sgb.de/sgbii/7.html> 참조.

23)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 276면 참조.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http://www.law.go.kr/건강가정기본법>

25) 김홍주, 『국가의 가족만들기와 과잉기획의 한계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혈연가족 서사는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공간적으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특정한 담론적 구성물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결혼으로 성립한 정상가족의 일원이라는 전제 하에 살아가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족을 꾸리는 것,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자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혈연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가족을 혈연가족과 동일시하고 혈연/비혈연의 이분법에 기초해서 생애과정과 삶의 지평을 표상하는 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의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속한 국가 제도, 사회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 5. 은유로서 가족적인 것의 확장

4절에서 서술된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족의 급진적 변화는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혈연가족이라는 표준적 서사가 해체되면서 가족담론이 확장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혈연가족 서사의 해체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고도로 기능분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집단과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개인에게 더 이상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교차점 가운데 하나의 관계성으로 상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자본주의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공동생산, 공동부양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혈연가족을 유지, 보존, 계승해야 하는 경제적, 물질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필자는 개인 C 가족 C 사회 C 국가의 위계적 지형학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자각이 혈연가족 서사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은 그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세월호의 침몰이 아니라, 가족과 국가를 운명공동체로 동일시하던 국민 정서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우리는 국가가 가족을 통해 국가적 위험을 관리하고 극복해 온 반면, 정작 내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의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지켜보았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촉발된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은 각 가족이 신분관계가 아닌 사회적 계약관계 속에서 국가를 심판하고, 각 개인이 자유로운 시민으로 국가와 마주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가족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15년에 폐지된 간통죄는 성인남녀의 결혼 문제를 민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현재는 간통죄가 생긴 지 62년만에 실질적으로 혼인제도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없고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9년에는 낙태권이 인정되었다.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성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해온 역사를 돌아볼 때 중대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가족은 가족구성원들 상호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은 가족 외부의 사회적 관계나 질서를 투영하기도 하고 그것과 대립하면서, 즉 가족과 사회는 서로를 규정하면서 일상생활의 실재를 구현해낸다. 따라서 가족은 외부와의 경계가 분명하게 그려진 구성원들만의 닫힌 공간이 아니라, 도시, 사회적 생산체제, 국가, 지구와 같은 이질적인 층위의 공간들과 끊임없이 변증법적으로 관계 맺는 열린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가족과 국가의 유기체적 결합이 느슨해지는 것은 그동안 국가의 제도를 통해 표준화된 혈연 가족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된다.

서양 사회와는 달리 개인주의를 역사적으로 경험해 볼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한국사회에서 혈연/비혈연 이분법에 근거한 가족이테올로기를 내파하기 위해서는, 혈연가족 서사가 발휘하는 규범적, 억압적 효과를

폭로하는 담론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혈연가족 서사에 내재된 가족적인 것을 전통가족과 신가족을 매개하는 은유적 매체로 재맥락하고 재해석하는 담론 또한 요구된다. 이는 가족이 개인의 선택과 자기가치부여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타의 친밀한 관계들과 구분되는 가족의 중심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혈연가족 서사를 규정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다.

필자가 보기에 혈연가족 서사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통가족과 신가족을 가로지르는 가족적인 것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혈연가족은 의식적 관계 이전에 몸과 유기체적 조건에 기반해서 상호연결된 ‘신체적 공생’의 의미를 함유한다. 혈연은 친구나 친한 선후배 사이를 뜻하는 인간관계인 지연과는 달리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이고 일차적인 관계로 간주된다. 물론 혈연이 개개인의 욕망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배타적 우위를 주장할 때 배제와 폭력의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혈연이 가족관계를 넘어 민족 통합 및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의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오용될 때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탄생과 병고, 죽음 등 생애를 함께 하는 혈연가족은 일상생활에서 서로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무매개적 직접성을 살의 차원에서 느끼고 체험한다는 발생론적 근거를 간단히 무시할 수 없다. 살과 살의 내밀한 접촉은 단순히 육체들 간의 맞닿음이 아니라, 다양하게 기능분화된 사회에서 코드화된 소통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인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혈연가족은 나와 너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타적 공유’의 의미를 전제한다. 내 자식, 내 식구만을 챙기는 가족이기주의는 건강한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가로막는 심각한 폐단이지만, 혈연 가족 패러다임에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선물경제, 이익과 손해에 있어 공동의 몫을 상징하는 나눔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나아가 한국의 미풍양속에서 접빈객, 두레, 품앗이 등 낯선 손님, 이웃, 다른 가족과 연대하는 이타적 혈연



공동체 문화는 현대적 맥락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되어 보존될 가치가 있다.

셋째, 혈연가족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역사적 서사’의 자연사적 바탕을 이룬다. 테일러(Ch. Tayler, 1931 ~ )는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현대인이 삶의 의미와 목표 상실, 자유의 상실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를 자아도취적 개인주의 문화에서 찾는다. 그는 그 대안으로 개개인이 중요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객관적 삶의 지평(Horizont)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다시 말해 나의 개별 선택과 행위가 온전히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자연사적 흐름 속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개인 삶의 의미 및 목표와 자유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혈연가족에서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라는 특정한 역할에 따라 확립적 삶의 서사가 강요되는 것은 문제겠지만, 나의 뿌리를 기억하고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성찰하며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탐색할 수 있는 혈연가족의 서사적 기제는 현대인에게 여전히 유의미한 삶의 자원일 것이다.

은유로서 가족적인 것의 확장은 혈연가족의 종말이 아니라 단일한 가족서사의 종말에 근간한다. 신체적 공생, 이타적 공유, 역사적 서사와 같은 가족적인 것의 계기들을 발굴하고, 이 계기들이 새롭게 출현하는 가족유형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열린 가족담론을 형성하는 데 관건이 된다. 다시 말해 제도적 가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족적인 것을 일종의 은유적 매체로 이해할 때, 우리는 혈연 vs 비혈연, 전통가족 vs 신가족의 이분법을 넘어선 열린 가족의 위상학을 사유할 수 있을 것이다.

## 5. 나가며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혈연가족의 의미와 역할이 탈자

26)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배 옮김, 이학사, 2001, 21면, 55면 참조.

연화되는 가운데, 가족이란 무엇이고 가족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이 새롭게 점화되는 중이다. 정부는 개인 삶의 질 향상, 성평등, 포용적 가족관을 아젠다로 내세워 가족의 주류 형태에서 벗어난 가족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끌어오려고 시도하는 한편<sup>27)</sup>, 생활동반자 법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거에는 일탈이었던 동거 형태들이 20세기 후반 이후 점점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와 함께,<sup>28)</sup> 가족 다양성의 정상화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다.

이제 가족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의해 성찰되고, 선택되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왜 필요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하나의 서사는 있을 수 없고, 각자의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복합적 상호관계를 묻고 따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근대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특정하게 만들어진 담론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서술하였다. 한국에 근대적 가족 개념이 도입되는 과정은 전통과 근대, 서구적 근대성과 식민지 근대성이 교차하는 복잡한 지형을 배경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혈연가족은 개인의 삶을 지탱하고 국민 국가 형성 및 산업자본가의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서사로 자리매김되었다. 나아가 필자는 가족에 대한 단 하나의 서사를 넘어 열린 가족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가족적인 것’이라는 은유를 탐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시간 의식 속에서,

27)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포용적 가족관”을 내세우고 있으며, 2019년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사실혼, 한부모 가족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8) 울리히 벡, 『자기만의 신: 우리에게 아직 신이 존재할 수 있는가?』, 홍찬숙 옮김, 길, 2013, 167면 참조.

자신을 어떤 유기적 전체(역사, 사회운동, 종교, 예술 등 실제적이든 상징적이든 어떤 전체) 속에 위치지움으로써 생의 의지를 갖는다. 가족적인 것은 내가 의존하는 유기적 전체(운명공동체) 또는 나와 함께 느끼고 나누며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관계의 은유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은유의 작동방식은 유기체로서 물질적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토대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체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혈연관계는 가족적인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한 가지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혈연/비혈연 이분법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재맥락화될 수 있다. 은유로서 가족적인 것을 둘러싼 가족서사의 충돌과 투쟁의 지점들을 규명하고 가족적인 것을 다양한 관계들의 은유로 확장하는 과정은 한국사회에 강고히 자리 잡은 가족이데올로기를 내재적으로 비판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자료집』, 2001, 27~51면.
- 김홍주, 『국가의 가족만들기와 과잉기획의 한계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분석』, 『가족과 문화』 제20집 2호, 2008, 99~125면.
- 김성배,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 개화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집, 2012, 7~35면.
-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정성훈, 권기돈, 조형준 옮김, 2009, 새물결.
- 뒤비, 조르주, 『사생활의 역사』 2권, 성백용 외, 새물결, 2006.
- 시덴틀, 래리, 『개인의 탄생』, 정명진 옮김, 부글, 2016.
- 양현아, 『한국가족법 읽기』, 창비, 2011.
- 울리히 벡, 『자기만의 신: 우리에게 아직 신이 존재할 수 있는가?』, 홍찬숙 옮김, 길, 2013.
- 이은정, 『가족의 범위』, 『가족법연구』, 제20집 1호, 2006, 193~220면.

- 정성훈, 『도시 인간 인권』, 라움, 2013.
-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
- 페로, 미셸, 『방의 역사』, 이영림·이은주 옮김, 글항아리, 2013.
- 하버마스, 위르겐,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나남, 2002.
- 헤겔, G. W. F., 『법철학』, 임석진 옮김, 지식산업사, 1990.
- \_\_\_\_\_. 『정신현상학』, 임석진 옮김, 한길사, 2006.
- 홉스, 토마스, 『리바이어던』, 진석용 옮김, 나남출판, 2008.
- Finkel, Eli, *The All-or-Nothing Marriage: How the Best Marriages Work*, Dutton, 2017.
- Streisand, Marianne, “Intimität”, *Ästhetische Grundbegriffe* 3, Karlheinz Bark. usw.(hrsg.), J.B.Metzler, 2010.

Abstract

## Extending Family

- The Metaphor of the Familial -

Ryoo, Do-hyang\*

This paper seeks to reflect on historical concepts of the standard family as a consanguineous institution, still prevalent in Korean society,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diversifying the family narrative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blood and non-blood. To this end, I first look at the Western modern family as a historical formation based on the civil family narrative of a unification of free and equal individuals. In civil family narratives, consanguinity is a personal matter rather than a subject of public examin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modern Korean conception of family, born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Hojuje' family registry system, holds kinship not only as the succession of paternal lineage but also as a central metaphor that supports the national system as an organic combination of 'country' and 'house'. The political wedding of family and state as an extension of kinship served as a key mechanism of national rule in Korea's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is blood/non-blood dichotomy, which is firmly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discourse is needed to expose the normative and oppressive effects of family narratives that regard the individual, family, and state as hierarchical relations. Furthermore, such discourse presents the opportunity to realistically understand the rapidly changing realities of 'family' and expand the familial metaphor.

Key Words : Kinship, Individual, Family, Nation, Extending Family, The Familial, Family Metaphor

---

\* Chonnam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류도향

소속: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 essayistisch@naver.com

논문투고일: 2019년 7월 22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8일